

부산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55725 판결 [투자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551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5572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134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13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7. 6.

판결선고 2022. 8.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13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에서 약정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년 12월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E 및 F 코인에 투자하면 3~4개월만에 고수익을 올려주고 원금도 모두 돌려줄 것이니 코인에 투자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C은 2017년 12월경 원고와, 원고가 코인투자금을 송금하면 피고와 C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코인투자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4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수익금과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22. 5.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 및 C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약정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코인투자금 4억 6,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아들인 I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7. 12. 26. 4,500만 원, C에게 같은 달 3,000만 원, 같은 달 29. 4억 원, 같은 달 30. 3,450만 원 합계 5억 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¹⁾,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19. 6. 17.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데 이어 2020. 12. 29.에는 위탁투자를 빙자하여 편취한 4억 6,500만 원을 반환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12.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기, 판사 임상민, 판사 김영환

1) 원고는 위 합계 5억 950만 원 중 4,45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 4억 6,500만 원을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